

# 보도자료



# 양형위원회

2023. 4. 24.

문의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31-920-5601)

## 양형위원회 4/24(월) 제123차 회의 결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3. 4. 24. 15:00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1] 관세범죄 양형기준, [2]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3]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4]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하였음

- ☑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등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 심의하여 양형기준 최종 의결
- ☑ 시행일: 2023.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
- ☑ 별첨: 의결된 최종 양형기준

### [주요 내용]

#### ① 관세범죄 양형기준 ☞ 수정 의결

#### 1.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관세포탈의 양형인자)

가. 의견: 정의규정 중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삭제(공청회 의견)

정의규정의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중 관세 초과 납부는 수입신고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매입원가를 높여 이익을 적게 보임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저가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 금액에 맞추어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와 같이 관세포탈과 수입가격 고가조작은 각각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수입업체가 납부하는 관세 총액의 변동폭만을 기준으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나. 의결 결과: 원안 수정

- 공청회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해당 예시적 정의규정으로 인해 ①판매 물품의 원가를 낮추어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경우나 ②매입원가를 높여 이익을 적게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③이미 단가가 확정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는 저가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 금액에 맞추어 높게 신고한 경우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공청회 의견대로 정의규정을 일부 삭제하기로 의결

## 2.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무신고 수입 등의 양형인자)

### 가. 의견: 정의규정 중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삭제(공청회 의견)

양형인자의 정의규정 중 하나로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를 들고 있음. 그러나 밀수입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정상통관된 물품으로 가장하여 일반 시가로 판매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경우 모두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친 수입물품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이득액의 경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나. 의결 결과: 원안 수정

- 공청회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해당 예시적 정의규정으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특별감경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공청회 의견대로 정의규정을 일부 삭제하기로 의결

## 3.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무신고 수출 등의 양형인자)

### 가. 의견: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 삭제

수출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후에는 폐기 또는 유통 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폐기 또는 회수된 물품이 수출한 물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밀수출죄가 성립한 이상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 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음

## 나. 의결 결과: 원안 유지

-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보건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수출품 자체가 갖는 폐해 및 위험 발생에 관한 특별가중인자로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존재함

## ②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 원안대로 의결

## ③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 수정 의결

### [주요 내용]

- ☑ 교통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 설정
-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 설정
- ☑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

※ 의결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따른 만취운전 교통범죄의 최대 형량 정리  
[2개 범죄 경합]

- 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0년6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어린이 치사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7년6월 + 3년 = **최대 10년6월**
- 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5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어린이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2년 + 3년 = **최대 15년**

- ③ 위험운전 치상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0년6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위험운전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7년6월 + 3년 = **최대 10년6월**

- ④ 위험운전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5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위험운전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2년 + 3년 = **최대 15년**

**[3개 범죄 경합]**

-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최대 14년9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상 후 도주 2년 - 9년, 어린이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9년 + 3년9월 + 2년 = 최대 14년9월

- ②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 치상 후 유기도주의 경우, **최대 16년3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상 후 유기도주 3년 - 10년6월, 어린이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0년6월 + 3년9월 + 2년 = 최대 16년3월

- ③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 치사 후 도주의 경우, **최대 23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사 후 도주 5년 - 15년, 어린이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5년 + 6년 + 2년 = 최대 23년

- ④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 치사 후 유기도주의 경우, **최대 26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사 후 유기도주 6년 - 18년, 어린이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8년 + 6년 + 2년 = 최대 26년

- 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위험운전 치상 +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최대 14년9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상 후 도주 2년 - 9년, 위험운전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9년 + 3년9월 + 2년 = 최대 14년9월

⑥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위험운전 치상 + 치상 후 유기 도주의 경우, **최대 16년3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상 후 유기도주 3년 - 10년6월, 위험운전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0년6월 + 3년9월 + 2년 = 최대 16년3월

⑦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 + 치사 후 도주의 경우, **최대 23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사 후 도주 5년 - 15년, 위험운전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5년 + 6년 + 2년 = 최대 23년

⑧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 + 치사 후 유기도주의 경우, **최대 26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사 후 유기도주 6년 - 18년, 어린이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8년 + 6년 + 2년 = 최대 26년

[양형기준 공통원칙]

나.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징역형·금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원안대로 의결

## 1.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

가. 서술식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형량범위

가 불명확하여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서술식 기준 내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

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의 벌금형 상한을 1,700만 원으로 상향

## 2. 형종 선택의 기준

### 가. 대유형 1(교통사고), 대유형 2(교통사고 후 도주)

#### (1) 의견: 서술식 기준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을 벌금형 선택 사유로 추가

벌금형 선택사유로서 ‘초범’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추가되는 것이 형법 및 양형기준의 취지와 체계에 합당하고 양형실무에 부합함.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양형기준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은 권고 형량범위에서는 일반양형인자의 위상만을 가지지만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공정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 내 처우로서 집행유예를 판단함에 있어 중하게 고려하고 있음
-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의 사유, 제62조의 집행유예의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인의 성행’ 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라는 양형요소가 포함됨
-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의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라는 양형요소가 중하게 고려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경우 가별성이 크지 않은 사례가 많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사안 중 ‘중과실, 일반 상해, 초범’ 이지만 중과실의 가별성이 크지 않은 사례
  -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사안 중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초범’ 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피해회복 정도, 교통사고와 사망의 경위 및 가별성의 정도 등 종합하여 가별성이 크지 않은 사례

#### (2) 의결 결과: 원안 유지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에 불과한데,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확정된 권고형의 형량 범위를 무력화하여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 나. 대유형 1(교통사고), 대유형 2(교통사고 후 도주)

#### (1) 의견: 음주운전 또는 마약투약 결합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수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에 관한 서술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의견

- 일반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
- 위험운전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음주운전·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

**(2) 의결 결과: 원안 유지**

- 교통사고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음주운전 또는 마약투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은 어차피 별개의 범죄로 처벌됨)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벌금형 선택을 제외하면 위와 같은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다. 대유형3(음주·무면허운전)에서 동종 전과 범위**

**(1) 의견: 형종 선택의 기준이 되는 동종 전과의 범위를 ‘5년 이내’ 에서 ‘10년 이내’ 로 수정**

- 2023. 1. 3.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가중요건으로 고려하는 전과의 시적범위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범죄구성요건으로 적용되는 전과의 범위보다 양형에 참작되는 전과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의결 결과: 원안 유지**

- 법정형은 해당 범죄의 전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고, 서술식 기준은 그 중 형종을 제한하는 사유로 동종 전과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10년보다는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동종 전과의 범위가 음주운전에 한정되지 않고, 무면허운전,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포함하므로, 5년 이내 3회 동종 전과 사례가 적지 않음

**라. 대유형3(음주·무면허운전)에서 벌금형 선택 제한**

**(1) 의견: 음주·무면허운전 4, 5유형에 관한 벌금형 선택 가능 서술식 기준을 삭제**

- 음주운전 관련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의 가중영역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경·기본·가중영역을 나누고, 특별가중·감경인자를 종합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줄이려는 양형기준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할 우려
-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각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에 미흡하게 됨

**(2) 의결 결과: 원안 유지**

- 음주·무면허운전 4, 5유형의 각 가중영역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양형사례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 있음. 음주·무면허운전 4, 5유형의 각 가중영역의 서술식 기준은 벌금형 선택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양형기준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인적, 물적 피해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서 가중영역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선택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한 취지에 반함)
- 또한 음주·무면허운전 4, 5유형의 각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 중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제한을 두고 있어 벌금형 선택 가능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은 아님

**3. 양형인자**

**가. 다수 피해자**

**(1) 의견: 대유형 1(교통사고), 대유형 2(교통사고 후 도주)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하나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법익의 침해(결과불법)가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
- 양형기준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과는 달리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 규정이 없어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할 방법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 범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방화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된 경우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는 양형기준이 다수 있음

## (2) 의결 결과: 원안 유지

### ○ 행위책임 원칙

- 고의범의 경우는 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의가 미치지만, 과실범의 경우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제어할 수 없는 우연적 사정에 의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어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

###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관한 양형인자는 고의범에만 규정되어 있음

- 기존에 위 인자가 가중인자에 포함되어 있는 방화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산업안전보건범죄(사업주 또는 행위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재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 모두 고의범임
- 특히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속해 있는데, 과실치사상 범죄와 산업안전보건 범죄가 같은 범죄군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인 산업안전보건 범죄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가중인자 포함, 과실범인 과실치사상 범죄에는 위 인자 없음

### ○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인자로 가중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

- 실제적 경합범: 형법 제38조에 가중처벌규정 있음 → 양형기준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하여 가중처벌(상한을 가중)
  - 상상적 경합범: 형법 제40조에 가중처벌규정 없음 → 양형기준 적용 ×
- ※ 양형기준 해설

### ○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상상적 경합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1) 의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삭제

2023년 3월 기준 대부분(89.3%)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감경인자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거나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를 가중인자로 두는 것이 타당함

### (2) 의결 결과: 원안 유지

- 가해자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양형인자로 규정하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였음
- 일반양형인자는 권고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등 예시적인 성격이 있어 대부분의 사안에 해당하는 인자를 포함시켜도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지 않음

#### ④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 원안대로 의결

##### ■ 다음과 같은 정비 사항을 43개 범죄군에 반영

-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규정 통일적 반영
-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피고인이 고령’ 삭제
- 심신미약에 관한 서술식 기준 반영
- 형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의 변경(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작량감경 → 정상참작감경) 반영
-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신설에 따른 전과 관련 문구 수정

#### ⑤ 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식

- 일시: 2023. 5. 9. (화) 10:00
- 장소: 대법원 1605호 회의실